

#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0. 17.) 상정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0. 17.) 상정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남 상 수)

가. 제안이유

-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 11. 13. 공포 · 2008. 1. 1. 시행)된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 관내에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함.(안 제2조)
-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에 따름.(안 제3조)
-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함.(안 제4조 및 별표)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없 음

#### 나. 반대토론

없 음

### 5. 심사결과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1호
의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제출년월일 : 2008. 10.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 11. 13. 공포·2008. 1. 1. 시행)된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시 관내에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함.(안 제2조)
- 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에 따름.  
(안 제3조)
- 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함.(안 제4조 및 별표)

### □ 칙 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천시 관내에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용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부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따라 쓰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여비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 액	정 액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30,000

-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개정 2008.2.29>

#### 여비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7>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7.17> [본조신설 2007.11.13]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제 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제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제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6.3.29, 2008.7.17>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제22조(국의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1.3.20]

제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입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

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제26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3.20>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07.11.13>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제27조(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②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제29조(여비지급의 특례)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7.11.13, 2008.2.29>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의

교통상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2008.2.29>

###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2008.2.29>

### ○ 부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削除 <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개정 2008.3.28>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

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

## ○ 지방공무원법

第63條(休職) ①公務員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 休職을 命하여야 한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2005.1.27>

1. 身體·精神上의 障礙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2. 削除 <1978.12.6>
3. 兵役法에 의한 兵役義務를 畢하기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4.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 事由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不明하게 된 때
5.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되었을 때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公務員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休職을 命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999.12.31, 2001.1.29, 2002.12.18, 2007.4.27, 2008.2.29>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海外留學을 하게 된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研究機關이나 教育機關등에서 研修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女子公務員이 妊娠 또는 出產하게 된 때
5.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配偶者·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外國에서 근무·留學 또는 研修하게 되는 配偶者를 同伴할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2007.4.27>

④任用權者는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2002.12.18>

## (현행 조례)

### 부천시 여비 조례

제정 1973. 07. 01 조례 제12호  
개정 1973. 08. 11 조례 제98호  
개정 1975. 01. 06 조례 제138호  
개정 1975. 01. 15 조례 제141호  
전문개정 1975. 05. 13 조례 제152호  
개정 1977. 11. 12 조례 제280호  
개정 1978. 01. 31 조례 제293호  
개정 1978. 07. 20 조례 제306호  
개정 1979. 04. 03 조례 제337호  
전문개정 1983. 01. 07 조례 제565호  
개정 1988. 05. 10 조례 제887호  
개정 1989. 05. 01 조례 제962호  
개정 1991. 01. 07 조례 제1088호  
전문개정 1998. 10. 10 조례 제1590호  
전문개정 2008. 04. 10 조례 제23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적으로 관할구역 내에 출장하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4조(준용)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천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 **부칙 (1973.07.01 조례 제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1975.01.15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75.05.13 조례 제1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7.20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1.07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